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1044
----------	------

2022. 6. 14.(화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- 다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- 라. 상정일자 : 2022년 6월 14일
  - 제4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 · 의결
- 마. 주요내용
  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박순영 문화체육관광국장)

### 가. 제안사유

- 2022. 8. 11. 시행 예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,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“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 지원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항”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

조문을 수정·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보조금 지원 관련 사항 신설(안 제7조)
  -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 규정
-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(안 제10조)
  -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

##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지원 조항을 신설하였고,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.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하여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의무 및 구체적인 지원 항목을 규정하였고,
  - 안 제10조 제3항에서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 규정 정비로 협의회 위원인 충청북도체육회장을 당연직 위원 항목에 명시 하였으며,
  - 그밖에 안 제7조제1항, 제10조제1항 등에서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음.
-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중 “지사는 법 제4조”를 “도지사는 제4조”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

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2. 관서운영 기본경비
3.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

④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

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도체육회장”을 “충청북도체육회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당연직 : 충청북도체육회장,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

제24조를 삭제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 중 운영비 지원 관련 부분은 2022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보조금 지원) <u>지사는 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7조(보조금 지원) ① <u>도지사는 제4조-----</u>  -----  -----  -----.</p> <p>② <u>도지사는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</u></p> <p>1. <u>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</u></p> <p>2. <u>관서운영 기본경비</u></p> <p>3. <u>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</u></p> <p>③ <u>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,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·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.</u></p> <p>④ <u>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

현 행	개 정 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제10조(구성) ① 협의회는 도지사, <u>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</u>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도 체육업무담당국장, <u>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(이하 “도체육회”라 한다)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(이하 “도장애인체육회”라 한다) 사무처장</u></p> <p>2. (생 략)</p> <p>제24조(관련 규정의 적용)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	<p>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비 또는 운영비는 보조금으로 교부한다.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,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제10조(구성) ① -----  <u>충청북도체육회장-----</u> 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 -----  ----.</p> <p>1. 당연직 : <u>충청북도체육회장, 도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체육업무 담당국장, 충청북도체육회 사무처장,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② 제8조부터 제17조까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 따른다.</p>	

## 관련법령 발췌

### □ 국민체육진흥법

제5조(지역체육진흥협의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체육진흥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, 지방체육회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)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, 지방체육회, 대한장애인체육회, 지방장애인체육회, 한국도핑방지위원회,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, 스포츠윤리센터,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 **충청북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**

## **1. 사업개요**

- 충청북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체력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을 길러 건강한 삶을 영위
- 2022. 8. 11. 시행 예정인 「국민체육진흥법」의 개정규정에 맞게 지역체육회 및 지역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의무 지원 조항을 신설

## **2. 비용 발생 요인**

- 도체육회 및 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의무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## **3. 관련조문**

- 안 제7조(보조금 지원) ②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운영비를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여야 한다.
  1. 상근직원 인력운영비. 이 경우 구체적인 인력운영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을 준용한다.
  2. 관서운영 기본경비
  3.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

## **4. 비용 추계결과**

### **가. 추계의 전제**

- 추계기간 : 비용은 지속발생 예상, 추계는 2022~2026년까지 5년에 대하여 실시
- 인원 : 도체육회(24명), 도장애인체육회(13명)
- 지급단가 : 인건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준용, 기타 업무추진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기준 준용

### **나. 추계 결과**

- 산출과정 :

<도체육회 운영비> '22년(1,977,600천원)

- 인력운영비 : 68,220천원 × 24명 = 1,637,280천원
- 경상운영비 : 14,180천원 × 24명 = 340,320천원

<도장애인체육회 운영비> '22년(1,022,100천원)

- 인력운영비 : 64,470천원 × 13명 = 838,100천원
- 경상운영비 : 14,150천원 × 13명 = 184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세부내역붙임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<b>총 계</b>	<b>15,925,700</b>	<b>2,999,700</b>	<b>3,090,000</b>	<b>3,182,000</b>	<b>3,278,000</b>	<b>3,376,000</b>
<b>도체육회 지원</b>	10,499,600	1,977,600	2,037,000	2,098,000	2,161,000	2,226,000
<b>도장애인체육회 지원</b>	5,426,100	1,022,100	1,053,000	1,084,000	1,117,000	1,150,000

※ '22년 운영비 대비 연 3% 증가분 반영(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적용)